

1. 개정이유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시의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기간을 조정하고,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개선하고자 함.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서류 개선(안 제4조)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시 첨부하도록 한 기본증명서를 삭제하고, 신청서를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토록 함.

나.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기간 조정(안 제6조, 별표 2 삭제)

현행 3년마다 7시간인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기간을 2년마다 6시간 이상으로 조정하고, 보수교육 연기 사유에 ‘군 복무’를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협의 중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영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발급하고”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발급받은”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으로, “제1항제2호의 서류와 자격증”을 “자격증”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환경교육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시간 이상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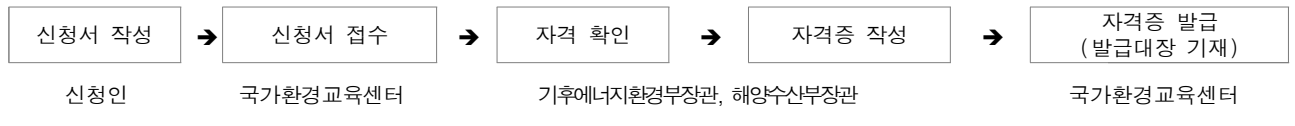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국외 체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군 복무, 임신·출산 등 제2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는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으로, “광역환경교육센터”를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로,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를 “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또는”으로, “시·도의”를 “시·도나 시·군·구의”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신청인	발급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재발급	환경교육사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담당자 확인사항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u>다음 각 호의</u>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 ----- ----- ----- 영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 었음을 증명하는 ----- ----- -----.
1. <u>영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u> <u>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u> <u>증명하는 서류</u>	<삭 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환경 교육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u>발급하고</u> ,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 다.	④ 제1항 및 제2항----- ----- ----- -----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 ----- --.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헛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제2호의 서류와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 ① (생략)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서를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② 제4항-----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

---- 자격증-----

-----.

제6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교육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

<신 설>

제12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
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
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1
항에 따라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시간 이상의 법 제18
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
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
자가 국외 체류, 질병·부상 등으
로 인한 입원, 군 복무, 임신·출
산 등 제2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가 해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내
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는 국가환
경교육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
다.

제12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은 --- 광역환경교육센터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u> <u>의견</u> <u>을 들어야 하며, 그</u> 사유를 명시 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 야 한다. ③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u> <u>시·도지사</u>는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u>광역환경교육센터</u>의 지정을 취 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u>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u> <u>당 시·도의</u>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u>및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u> <u>역환경교육센터”라</u> 한다)--- <u>그</u> ----- -----. ③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u> <u>수산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u> <u>·군수·구청장은</u> ----- <u>지역환경교육센터</u>----- ----- --- <u>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u> <u>산부 또는</u> ----- -- <u>시·도나 시·군·구의</u> --- -----.
--	---